

1980년대 해외여행자유화 정책과 해외관광의 형성

알리에바 바하르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통번역학부 전임강사, 사회학 전공
aliyeva2011@daum.net

- I. 서론
 - II. 해외여행자유화 이전의 해외관광
 - III. 해외여행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현실화된 해외관광
 - IV.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시대: 해외관광의 대중화
 - V. 결론
-

I. 서론

오늘날 한국에서 해외관광은 경제적·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화된 여가활동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해외관광이 이렇게 대중화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80년대 중엽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내국인의 해외관광은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었다.

세계사적으로도 해외관광이 보편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유급휴가가 제도화되면서, 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항공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현상이었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1950년대까지는 최후진국으로 머물렀다. 따라서 1960년대 이래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해외관광의 발전이 지연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후 198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해외관광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해외관광 금지 정책의 결과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래의 장밋빛 꿈으로 이야기되던 ‘해외여행자유화’는 1981년에야 실현에 옮겨져 해외관광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이 또한 전면 자유화가 아니라 단계적 자유화, 규제의 단계적 완화였다. 이렇게 한국에서 해외관광은 시장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되거나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 개입의 대상이었다.

해외여행의 통제와 자유화는 한국 사회에 존재했던 또 다른 ‘규제’와 ‘자유’, 예컨대 소비와 여가 활동을 둘러싼 규제와 자유에 대해서 새로운 시사점

※ 이 논문은 알리에바 바하르, 「한국에서 해외관광의 형성: 1980년대 ‘해외여행자유화’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17)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을 제공해 주고 무엇보다도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해외관광에 대한 통제는 1980년대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 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민들의 해외관광이나 해외여행자유화 정책은 연구 대상으로 별 관심을 끌지 못했고 주로 경영학·경제학적인 관점에서만 몇 가지 접근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해외여행자유화를 전후하여 등장한 이들 연구 대부분에서 제시되는 논쟁이나 주제들은 당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며, 주요한 논점들은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이거나 해외여행업 및 여행상품의 개발, 혹은 한국인들의 해외여행 동향 등이다.¹

한편 해외관광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관광의 형성과 변천 과정의 한 부분으로 국민 해외관광의 등장과 그 발전 과정을 다룬 인태정, 김봉 등의 연구가 있다.² 특히 인태정의 연구는 사회문화학적인 관점에서 관광을 고찰한 연구로, 한국에서 관광의 형성과정을 단순히 서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의 사회학적 함의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³

해외관광(혹은 해외여행)은 모든 형태의 여행을 가리켜서 부르는 것이지만 관광이 등장한 이래 그것은 일상생활의 여러 면과 결합하면서 신혼여행, 효도 관광, 수학여행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권기숙과 박부진의 연구에서는 이 중 한국의 신혼여행 행태를 집중으로 논의했다.⁴

1 이런 연구들로는 윤대순, 「旅行業의 商品開發에 關한 研究: Package tour를 中心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4); 최진두, 「國民 海外旅行의 旅行商品 開發과 販賣促進에 關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8) 등의 연구들이 있다.

2 인태정, 『관광의 사회학』(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김봉, 『관광사』(서울: 대왕사, 2010).

3 인태정, 위의 책.

4 권기숙, 『신혼여행의 사회학』(서울: 문학과지성사, 1998); 박부진, 「신혼여행의 문화사: 새로운 통과의례의 시작과 현재」, 『한국문화인류학』 40-1(2007), 3~42쪽.

해외관광은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적 이동인데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권이며 여권은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통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해외여행 통제 역시 여권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므로, 한국의 여권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부분은 개항기 이래 해방 이전까지에 대한 연구들이다.⁵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여권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해외이동이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해외이동이 아닌 오히려 여권제도와 출입국관리상의 규정을 어긴 해방 이후 일본 등으로의 밀항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졌다.⁶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일부 논문에서 짧게 언급된 내용들을 제외하면 해방 이후에 해외여행을 역사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구나 아주 당연하게 자유롭게 떠나는 해외여행, 그중에서도 해외관광이 무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강력하게 통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해방 이후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해외관광이 형성된 과정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연구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해방 이전 한국인들의 해외이동 혹은 해외여행이 주로 위로부터 조직된 것이었다면, 해방 이후에도 국민들의 해외여행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대상이

5 서호철,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 호적제도의 변용과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7); 김설하, 「여권의 기원과 등장으로 본 개항기 근대성, 1883-1905」,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김도형, 「한국 근대 旅行券(旅券) 제도의 성립과 추이」, 『한국 근현대사 연구』 77(2016), 7~55쪽 등 참조.

6 차승기, 「수용소라는 안전장치: 오무라(大村)수용소, 폴리스, 그리고 잉여」, 『한국학연구』 32(2014), 315~337쪽; 이정은, 「'난민' 아닌 '난민수용소', 오무라 수용소」, 『사회와 역사』 103(2014), 323~348쪽 등.

었고 정부의 정책하에서 규제되거나 완화되었다. 해외여행이 전면 금지되거나 중지된 적은 없었지만 1980년 후반까지 완전히 자유로웠던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정부의 이런 관리와 규제가 어떻게 가능했고 또 어떻게 작동했는지, ‘해외여행자유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치였으며, 이는 해외관광에 어떠한 ‘자유’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해외여행자유화를 계기로 한국에서 해외관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었는지를 이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우선, 활용한 주요한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⁷와 전자관보⁸에서 제공하는 여권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료이다. 여권과 관련된 법률 이외에도 분석 내용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관광 관련 법률 등을 참고했다.

다음으로 활용한 자료는 국회 회의록과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정부 보고서 등의 문서들이다.⁹ 이 자료들을 여권 발급의 제한, 해외여행 통제에 대한 이유와 의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했다.

그 외에 활용한 자료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¹⁰에서 제공하는 『통계 연보: 연도별 출입국 통계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¹¹ ‘국가통계포털’¹²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 자료와 대한민국 정보공개¹³를 통해서 외교부 여권과에 직

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8 전자관보(<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Main.do>).

9 국회 회의록은 국회 회의록 국회 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에서 검색했다. 각종 보고서 등 정부 문서들의 출처는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임을 미리 밝혀 두고, 본문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문헌들을 관리번호로 표시했다.

10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11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12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13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접 요청하여 이메일로 받은 연도별 여권 발급 통계자료 등이다. 연도별 출입국 관련 자료는 1960년대 이후부터 시기를 집계한 것이어서 그 이전에 수치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1978년 여권 발급이 전산화되기 이전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 수에 관한 통계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 교통부,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공사 같은 기관에서 진행했던 통계조사 등의 자료들을 활용했다. 통계자료들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은 신문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했다. 그리고 해외여행·여권 등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실 혹은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 분석을 활용했다. 신문 자료로 활용한 것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각종 신문 기사다.

기타 자료로는 세방여행사의 『세방25년사』, 《신부》와 1988년부터 발간된 잡지 《해외여행》, 개인 기행문 등을 활용했다.¹⁴

문헌 자료 이외에 해외여행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던 당시, 즉 1980년대에 외교부 여권과장이었던 송영오와 이메일로 질문을 하여 해당 답변을 보충적으로 활용했다.¹⁵

II. 해외여행자유화 이전의 해외관광

한국에서 해외관광이 대중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였지만 한국인의 국제적 이동은 19세기 후반기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14 세방(주), 『世邦25年史』(世邦, 1986) 여권, 《신부》, 1989년 8월; 한국관광홍보, 《해외여행》 각호.

15 당시 여권과장이었던 송영오는 『사랑과 명예: 한 외교관의 삶과 정치 에세이』(서울: 해누리, 2012)라는 저서에서 해외여행자유화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필자는 그 글을 먼저 접하게 되어, 이메일을 찾아서 연락했다.

19세기 말까지 엄격한 ‘해금’이 실시되었던 한국(조선)에서 해외여행이란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으나, 개항 이후 외국과 교섭이 빈번해지면서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으며 내국인의 해외이동도 상당히 이루어졌다.¹⁶ 그러나 한국인들이 지금의 관광과 비슷한 개념의 해외여행을 비교적 활발하게 하는 시기는 일본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한 이후였다. 1906년 일본 역사상 첫 단체여행이 시작한 이래 일본은 일본인 해외여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조선인의 일본 시찰이나 수학여행도 추진했다. 이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근대문물을 견문시킴으로써 식민지 지배의 동조자 및 협조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3·1운동 이후 이런 일본 시찰단이 더욱 본격화되었고, 원래 국내여행으로 한정되었던 수학여행 또한 일본이나 만주로까지 확대되었다.¹⁷

그러나 1930년대 후반기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이동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일제의 관광정책은 ‘억제’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에서도 해외여행은 억제되었다.¹⁸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한국은 해방되었으나 미국·소련에 의해 동북아시아가 분할 점령되는 등의 장벽에 대해 국내에서의 각종 정치적 경제적 명분이 추가되면서 남·북한 주민의 해외이동은 양측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해방 직후에는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적·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1950년대 말까지는 해외여행의 기회는 물론 여행

16 김도형, 앞의 논문(2016), 8~15쪽.

17 국사편찬위원회, 『여행과 관광으로 본 근대』(서울: 두산동아, 2008), 197~199쪽; 조성운,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서울: 경인문화사, 2011), 6쪽; 조성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수학여행」, 『한일민족문제연구』 23(2012), 91~92쪽.

18 조성운, 위의 책, 25~35쪽.

수단이나 기반, 관련 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가 여권과 출입국 관련 법안과 각종 규정을 정비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본격적 파악과 통제에 나선 것은 1960년대 초 박정희 군사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였다. 정부의 해외고용노동력이나 이민 진출 정책으로 인구의 해외이동 증가가 예견되면서, 해외이동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필요해졌고, 이런 배경하에서 1961년 12월 31일에 「여권법」(법률 제940호), 1962년 3월 9일에 「해외이주법」(법률 제1030호), 1963년 3월 5일에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1289호) 등이 뒤이어 제정되었다. 이 중에서 국민들의 해외이동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은 여권장치였다.

‘외화 절약’이라는 명분으로 정부는 외화 사용의 필요 여부에 따라, 또 국가 경제개발에서의 역할에 따라 해외여행을 범주화하고 분류했다.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관련되거나 여비를 해외의 초청자가 부담해서 외화 지출의 우려가 적은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요건에 따라 여권 발급을 허용했지만, 그렇지 않은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최대한 억제했다.¹⁹ 급기야 1974년 12월에 31일에 「여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면서 여행 목적에 따라 여권의 종류와 발급 절차를 따로 정했다.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으로 간주된 해외관광은 여권 종류에 들어갈 여행 목적의 범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관광 목적의 여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한국인에게 해외관광이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방문, 상용·문화 등의 다른 목적의 해외여행 기회에 부수된 형태로만 가능했다. 정부는 국내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했지만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다.

19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 외무부훈령 제72호, 《관보》, 1972년 7월 25일.

III. 해외여행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현실화된 해외관광

1.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도입: 관광여권의 등장

1970년대 후반부터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보였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과 외환보유고가 급증하면서, 이전에 외화 절약을 이유로 통제되었던 해외여행이 가까운 미래에 허용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낳았다.

정부는 일반인들의 해외여행을 앞으로 3년 내지 5년 내에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해외여행관광적금제를 신설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 외환보유고가 급격한 추세로 증가, 일반인의 해외여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가용외환에 큰 주름살을 주지 않는다는 정책 판단이 내려지고 있고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일반인 중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홍보관 차원에서도 이제는 해외관광을 할 수 있다는 국력의 신장을 과시할 단계라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²⁰

1977년 한국은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돌파했고 이것은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적인 숫자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들어 갑자기 해외여행 자유화가 거론된 것은, 한국이 일정한 경제 수준에 이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5·16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갖게 하여 당장의 저항과 사회운동을 막으려고 했

20 「해외여행 관광적금제 검토」, 《경향신문》, 1977년 6월 3일.

다. 그러나 열악한 조건 아래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해야 했던 노동자, 도시산업화로 급증한 도시빈민 등 독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이 낳은 사회모순은 삶의 여러 면에서 곧 나타났다. 경제개발, 조국 근대화라는 명분 아래서 이루어진 탄압과 비인간성은 정권에 대한 저항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²¹ 이전에는 경제개발이라는 명분이 여러 면에서 통제를 가하는 데 효율적으로 작용했으나, 개발독재로 인해 열악하고 억압적인 생활을 살게 되는 민중들의 분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동기 부여가 필요했다. 소비와 오락, ‘복지사회’ 등이 그런 것이었다.

1962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세계 1위로 나타난 현상은 경제개발의 성과를 증명했다. 따라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소비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사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열악한 노동시장 등으로 국민적 저항이 날로 거세지는 박정희 군사정권 말기에 이런 약속은 여러 차례 되풀이되었지만 실제로 규제 완화책이 수립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였다.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박정희 암살 사건 이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짓밟으면서 등장한 신군부정권의 대국민 회유책의 일부였다. 전두환 신군부정권은 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정의사회’, ‘복지국가’ 등의 구호를 내세웠고, 국제적으로도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일정한 개방정책들을 실시하기에 나섰다. 이 가운데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는 겉으로는 아주 적실하게 ‘자유’를 과시하면서도 실제로는 1980년대 말까지 선전만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던 ‘과시용’ 정책에 불과했다.

하여튼 광주 민주화항쟁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80년 6월쯤

21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과주: 서해문집, 2010), 390~406쪽.

부터 여권 발급 업무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²² 그동안 해외여행은 여권 발급을 통해 규제되었기 때문에 여권 발급 업무의 간소화는 곧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는 뜻이었다. 완화 조치가 아직 계획 중이던 1980년 7월에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는 방학 중 대학생들의 해외연수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²³ 관광여행은 물론이고 기타 목적으로도 여권을 발급받기 힘들었던 당시로서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의 허용은 정부가 부여한 큰 혜택이었다. 거기에는 물론 학생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대학생 해외연수에 이어 해외여행경비의 허가제도의 폐지,²⁴ 방문 목적의 여행에 대한 초청 허용을 1촌에서 3촌까지 확대하는 등 일부 완화 조치들이 추진되었다.²⁵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된 해외여행 완화 조치는 1981년 8월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외관광이 허용되는 등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러나 해외여행 확대 방안은 해외여행을 처음부터 완전 자유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자유화’를 계획한 것이었다. 단계적 자유화란 해외여행을 제한 혹은 규제하는 규정들을 경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차차 완화해 가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까지 완전 자유화한다는 것이었다. 1981년 8월 1일부터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첫 단계에 들어간 해외여행자유화를 위한 조치는 큰 틀에서 여권 유효기간, 여권에 목적지 미기재, 여

22 「시행령 개정방침 여권 발급 대폭 간소화」, 《경향신문》, 1980년 6월 7일; 「취업 여권 발급 때 신원보증제 폐지」, 《동아일보》, 1980년 6월 25일.

23 「올 여름 방학부터 대학생 해외연수 규제 풀어」, 《경향신문》, 1980년 7월 23일.

24 해외여행경비 허가제도는 해외여행을 할 경우 외국환 은행의 개별심사를 통한 허가를 받아야 외화를 바꿀 수 있는 제도였다. 이 해외여행경비 허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여권만 제시하면 규정된 한도 내에서(당시에는 1인당 3,000달러, 동거, 방문, 취업 목적의 경우에는 1,000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게 되었다. 「여권만 제시하면 1인 3천불교한 외국환관리 개선」, 《경향신문》, 1980년 10월 3일.

25 「여권법 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07호(1981.4.1.).

권 발급 대상자 확대, 여권 발급 업무 간소화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1>과 같다.

1981년 2월 28일의 「여권법」 개정에 따라 3월 말에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264호)이, 또 4월 1일자로 「여권법 시행규칙」(외무부령 제107호)이 마련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권은 크게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로 구분되었고, 단수일반여권의 여행 목적은 상용·문화·동거·방문·유학·취업·기술훈련·거주로, 복수일반여권의 여행 목적은 상용·문화·거주로 구분되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 그런데 1981년 4월에 정권으로부터 추가적인 해외여행자유화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고, 이 지시에 따라 닉 달 만에 「여권법 시행령」(8월 1일, 대통령령 제10437호)과 「여권법 시행규칙」(8월 3일, 외무부령 제110호)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때의 「여권법 시행규칙」은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이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2조의 여행 목적이다. 여행 목적은 ‘상용(B)·상사주재(BL)·문화(C)·문화주재(CL)·단기학술연수(CS)·동거(J)·근친방문(V)·친지방문(VP)·유학(S)·취업(EMPLOYMENT)·기술훈련(T)·거주(RESIDENCE)·관광(TOURISM)’ 등으로 세분화되고 비자처럼 여권면에 기재할 기호도 붙여졌는데, 맨 마지막에 ‘관광(TOURISM)’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까지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던 관광 목적의 여행은 해외여행자유화의 주요한 상징이었다. 해외관광이 허용된다는 것은 해외여행의 ‘사실상 자유화’이기도 했다.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에 따라 관광여행이 허용되었으나, 대상자가 5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나이 제한이 있었다. 관광에 대한 완화 조치 실시는 1983년으로 계획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이 제한을 차차 완화할 예정이었다.²⁶

26 『제108회 제16차 국회 외무위원회 회의록』(1981.12.7).

표1- '해외여행자유화를 위한 조치'의 주요 내용²⁷

구분	현행	개정	시행 시기
단수·복수 여권 구분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 있음 · 일시귀국허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 복수(단, 방문·관광·학술 단기 연수 여권 제외) · 일시귀국허가제도 폐지 	1981. 8. 1
여권 유효기간	1~5년	원칙적으로 5년(방문·관광·학술 단기연수여권은 1년으로 함)	1981. 8. 1
여권에 여행국 기재	여행국 기재(상용 복수 여권 제외)	여행국 미기재. 다만, 공산국 여행 제한 명시	1981. 8. 1
부부 동시 여행	부부 동반 방문 여행에 50세 이상으로 연령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제한 폐지 · 중복서류 제출 면제 	1981. 8. 1.
관광여행	불허	50세 이상 연령 해당자에 대한 개인 및 단체 여행 허용	1983. 1. 1
		35세 이상 연령 해당자에 대한 개인 및 단체 여행 허용	1980년대 중 반 외환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방문초청	3촌 이내 혈족 인척	초청자 비용 부담 시 모든 친지 가능/ 자비부담 시 현행대로	1982. 7. 1
자비유학	자격시험 제도 적용	자격시험제도 폐지	1981. 8. 1.
방학 중 해외 어학연수	대학 재학생	초등학교를 제외하여 모든 학교 재학생이 가능	1981. 8. 1
상용여권	상용복수여권에 수출 실적 필요	수출 실적 필요 없음	1981.91
구비서류	본인 인감증명	폐지(본인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1981. 8. 1
	개인 납세필증	면제 범위 확대	
관계 부처 조회	필요	원칙적으로 폐지(소속 기관장 추천 등으로 대체)	1981. 8. 1
소양교육	유효기간 3년, 대기기 간 10일	유효기간은 5년(기간 내 재차 여행 시 교육필증 제 출 면제) 대기 기간 2일, 교육면제 대상 확대	1981. 8. 1

27 『제108회 16차 국회 외무위원회 회의록』(1981. 12. 7); 「여권 이렇게 달라진다」, 《동아일보》, 1981년 7월 25일의 표를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1981년 8월 개정),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1981년 8월 개정)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구분	현행	개정	시행 시기
신원조회 소요기간	7~15일	본적지 조회와 일선지 파출소경 찰관의 면접조사를 폐지하고 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	1981. 8. 1
		전산 처리	1983. 1. 1
		출국 전 공항 및 항만에서 처리	1984. 1. 1
여권 발급기관 등	서울과 5개 시도 및 8개 공관	재외공관에 여권 발급 위임 확대	1982. 1. 1
		지방 및 구청(서울 경우)에 여권 발급 업무 위임	1985. 1. 1
		여권 발급 업무 전산화	1983. 1. 1

해외여행자유화 방안 가운데 다른 목적의 해외여행보다 관광 목적 해외여행의 ‘자유화’가 이렇게 연기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상용이나 문화 혹은 방문 목적의 여권은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도 초청장이나 그 여행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관광은 초청장 등의 서류 없이 그냥 관광이라는 사유로 해외로 나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므로, 한번 허용되면 온 국민을 대상으로 예비 여행자들을 창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규제해 왔던 상황에서 갑자기 해외관광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 우려가 되는 사항이었다. 따라서 우선 실행 시기를 1983년으로 미루고 그때까지 상황을 살펴보고 자유화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다.²⁸ 관광여행을 허용하기 전에 친지방문 목적의 여행을 먼저 허용했는데 이는 전자에 대비한 준비 단계였다.²⁹

하여튼 1983년에 관광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용되기

28 이에 대해서 당시 여권과장이었던 송영오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해외여행 제한정책에서 갑자기 전면 자유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관광여권까지 허용할 만큼 정책적, 제도적, 물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여행자유화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을 보완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여 관광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29 『제108회 제16차 국회 외무위원회 회의록』(1981. 12. 7).

표2-월평균 임금(1981~1985)³⁰

(단위: 원)

연도	전산업	제조업
1981	212,477	176,176
1982	245,981	202,117
1983	273,119	226,790
1984	296,907	245,261
1985	324,283	269,652

는 했으나, 여기에는 대상자가 5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나이 제한이 있었다. 그런데 나이 제한만으로 해외관광의 허용 기준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 범위를 더 좁히고, 그 범위 안에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여행하지는 못하게 통제하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었다. 그것은 예치금 제도로 이른바 재산과 여행횟수에 대한 제한이었다.

예치금 제도란 여행 전에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이는 관광과 친지방문 목적의 여권에 한했는데 방문목적의 경우에는 100만 원, 관광목적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1년 동안 예치해야 해당 목적의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나갈 수 있었다.³¹

〈표2〉와 같이 당시 월평균 임금은 전산업의 기준만으로 해도 1985년까지 약 21만~29만 원 사이였다. 그러나 200만 원을 예치하려고 하면 월별 약 16만 원씩 은행에 입금해야 했다. 게다가 이 금액은 여행경비와 별 상관없는 금액이라 여행자는 월평균 20만 원대의 임금으로 예치금과 여행경비까지 마련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해외관광을 완화한다고 해도 이는 실제적으로 일부 상류층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다.

30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변화: 통계편」, I. 경제 4. 소득과 소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1 「여권법 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15호(1983.6.14), 제7조(관광목적 여행자들의 예치금등).

한편 여행 전에 예치하는 예치금은 귀국 후 2개월 지난 후에 귀국사실확인서를 예치기관에 제출해야 반환받을 수 있었다.³² 관광 목적 여권의 경우 출국 후 3개월 이내, 친지방문 목적의 경우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여권 발급 신청 시 지정된 기간에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귀국서약서’를, 여행을 다녀온 온 다음에 여권 발급기관에 ‘귀국신고서’를, 예치금기관에 ‘귀국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³³

여권 발급 신청 과정에서부터 신청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꼭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서약을 받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정부가 발급해준 여권이 외국에서 더 신뢰성을 확보하고 비자를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귀국서약서 등 사전에 불법 체류자를 방지하고 체류 자격이 끝나면 꼭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강구하고 만들어 냈던 것이다.³⁴

한편 관광여권으로 국외에 여행한 자는 귀국 후 1년 이내에, 방문 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한 자는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관광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해야 다시 해외관광을 할 수 있었다.³⁵ 해외관광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잡은 해외관광여행’을 막기 위해서였다.³⁶

결과적으로 ‘해외여행자유화’의 계기로 1983년부터 해외관광이 허용되기는 했으나 이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면 갈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언제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갈 수 있는 것이었다.

관광여권에 대한 나이 제한 등을 차차 완화할 계획이 있었으나 해외관광

32 「여권법 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15호(1983.6.14), 제7조(관광목적 여행자들의 예치금등).

33 「여권법 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15호(1983.6.14), 제6조의3(귀국서약서의 제출 등).

34 『제110회 제2차 국회 외무위원회 회의록』(1982.3.11).

35 「여권법 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14호(1982.8.18).

36 KBS 제2TV <상쾌한 아침입니다>(1982.9.1).

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부작용'들이 문제시되었다. 1981년 해외여행자유화를 위한 여권 발급 규제가 완화된 이후 관광성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위조 여권, 불법 출국, 불법 외화 반출, '보따리 해외여행 쇼핑', '어글리 코리안', '외화 낭비' 등 각종 문제들이 생겼고³⁷ 다른 한편으로 관광수지/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있었다. 사실 위조 여권이나 변칙 해외여행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아무리 엄격한 규정이 있다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틈새는 늘 있는 법이다. 그러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이런 사례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는 곧 해외여행이 완화된 것과 연관되어 여권 발급의 완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이전에 해외여행이 제한을 많이 받았던 여성들이 변칙 해외여행의 주범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는 곧 국가 체면 등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해외여행을 다시 통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여권 발급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은 물론이고 반입 물품이나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선물 안 사오기' 운동이나 국산 애용품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³⁸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이런 대처 방안들은 사실상 자유화 조치의 후퇴를 의미했

37 이런 사건들로는 위조 여권으로 은행에서 34만 달러를 환급하고 반출하려고 하다가 걸리는 '34만 달러 사건', 변조된 여권을 가지고 돌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미스 서울 소동' 사건 등이 일어났다. '미스 서울 소동 사건'의 계기로 여권 변조를 막기 위해 여권의 사진 부착 부분에 특수한 화학 처리를 해 출입국 때 과학적으로 변조 여부를 즉시 가려낼 수 있도록 새로운 여권을 만들었다('환전책·위조책 4명 34만 달러 사건', 《동아일보》, 1982년 6월 16일; 「관치는 위조 여권 출입국에 큰 구멍」, 《동아일보》, 1982년 9월 14일; 「사진 부분 화학 처리 여권 특수제작」, 《동아일보》, 1982년 10월 7일). 한편 1983년 1월 31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실린 기사에서 한국 여성 관광객들이 쇼핑에 몰두하는 모습이 풍자적으로 묘사된 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한국인 '보따리 쇼핑'에 특수 노리는 일하관향', 《경향신문》, 1983년 1월 31일). 이는 국가 이미지와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서 해외여행을 다시 통제하는 데 정당한 이유를 제공해 준 사건이었다.

38 「해외여행 자체축구」(1983.2.24, BA0398709); 「해외여행 자유화 따른 대책」(1983, BA0246476); 「공직자와 해외여행선물」, 《경향신문》, 1983년 2월 16일.

다. 해외관광에 대한 완화 조치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정부는 해외관광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부추기지 않도록 해외관광에 대한 광고나 홍보들을 통제하기까지 했다.³⁹

2. 패키지 해외관광의 등장

1981년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로 1983년부터 해외관광이 허용되었고 이로써 해방 이후 한국에서 해외관광이 하나의 소비 상품 혹은 문화로서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여권제도상으로 규제되었던 해외관광이 가능해지자 먼저 여행업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그동안 외래객 유치에만 힘을 썼던 여행사들은 유치와 송객을 병행하고 패키지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세방여행사의 ‘아리랑 하이라이트’ 상품을 시작으로 해서 한진관광의 ‘KAL World Tour’ 등의 해외관광 패키지상품들이 등장했다.⁴⁰

그러나 50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해외관광을 허용하다 보니 관광객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고 해외관광은 별 인기를 끌지 못했다. 1983년 첫 한 달 동안 해외관광 신청 건수는 83건밖에 안 되었다. 신청자 대부분은 무직이었고 나이가 50~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⁴¹

단체 관광여행의 첫 출발은 1983년 2월 22일 세방여행사에 의해 여행자 16명이 출국하면서 시작되었다. 남성 10명, 여성 6명으로 자녀들의 효도 관광으로 처음 해외로 나가게 된 사람들이었다. 여행 목적지는 대만을 비롯해 태국, 말레이사 등 동남아 6개국으로 13박 14일 동안의 여행경비는 1인당

39 「해외여행자유화에 따른 대책」(1983, BA0246476).

40 한국여행신문사, 『한국관광50년비사』(서울: 한국여행신문사, 1999), 382쪽.

41 「해외관광여행신청 저조 자유화 한달동안 83건뿐」, 《동아일보》, 1983년 2월 2일.

42 《동아일보》, 1983년 2월 23일.



그림1-해외여행자유화 이후 첫 단체 여행⁴²

139만 3,300원이었다.⁴³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첫 단체 해외관광객의 출국 소식은 당시 신문들에서도 빠짐없이 보도되어 공항에서 그들의 모습이 취재되었다(그림1 참조).

그러나 해외관광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3년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해외관광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합쳐도 9,866명으로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1984년 기준으로 해외관광 경험자가 4.1%에 불과했으나 해외여행 예정자의 목적으로는 관광여행이 77.7%로 1위였다.⁴⁴ 해외관광 인구의 잠재력은 높았으나 해외관광 경험자가 적었던 것은 우선 제도적으로 관광여권에 대한 나이 제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이 제한과 동시에 예치금 제도 및 여행경비 부담 등도 해외관광 이용률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1983년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코스는 1주일간의 일본여행으로 71만 9,000원(946달러)이 들었다.⁴⁵ 따라서 패키지 요금과 예치금까지만 해도 최소한 270만 원이 넘는 여행비용이 필요했다. 그런데 월평균 임금이 20만~30만 원대였던 당시로서 일반인들에게 해외관광을 위해 이

43 「50세 이상 해외관광객」, 《매일경제》, 1983년 2월 22일.

44 국제관광공사(편), 『전국민여행동태조사』(서울: 국제관광공사, 1984), 30쪽.

45 「해외여행가이드」, 《경향신문》, 1983년 8월 9일.

정도 비용을 지불하기란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또 해외관광 상품의 유통과 판매, 홍보 등에 존재했던 문제점도 해외관광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해외관광 완화 조치에 따라 일부 여행사에서 패키지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했으나 전국적인 판매 조직망이 없었고, 정부가 신문 등 대중매체에서 해외관광 관련 광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함에 따라 여행사들이 광고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모객 방법은 주로 여행사 직원들의 개별 방문 관촉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⁴⁶

결과적으로 해외관광은 1983년부터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여전한 통제 속에서 여러 요인들로 인해 대중화될 수가 없어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소비문화로 남아 있었다.

IV.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시대: 해외관광의 대중화

1. 여권 발급의 ‘자유화’와 해외여행 시 소지금 한도의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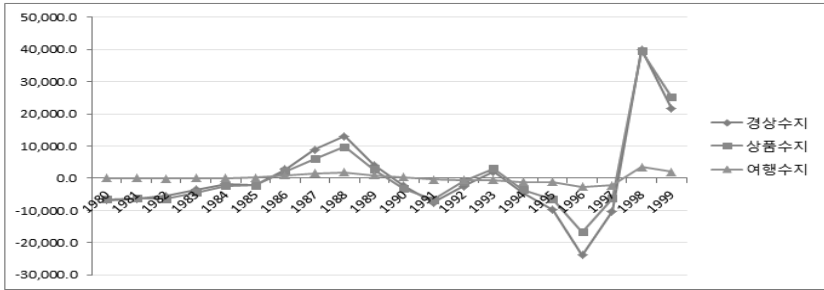
1981년에 시작된 해외여행자유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후퇴했다가 1987년부터 다시 등장했다.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재등장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동했다. 그러한 요인들 중 우선 관광수지의 증가와 다가온 88올림픽의 개최를 들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의 출국은 규제한 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쓴 결과 관광수지 흑자가 증가하여 외환 보유가 늘어난 것이다. 그때까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외화 절약’을 이유로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되

46 한국여행신문사, 앞의 책, 383쪽.

그림2-한국의 국제수지(1980~1999)⁴⁷

(단위: 백만 달러)



었다. 그러나 1987년쯤 되면 관광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여 외화사정이 호전 될 뿐만 아니라 88올림픽으로 많은 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지속적인 관광수지의 증가가 예측되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요인들에 근거해서 해외여행규제에 대한 완화 조치가 계획되었던 것이다.

한편 다른 국가들과의 관광교역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해외여행을 개방 해야 한다는 것이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추진 요인으로 꼽혔다. 이점에서도 88올림픽의 개최가 중요했다. 세계적 행사인 88올림픽의 개최로 세계 각 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어 관광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국 또한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늘려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⁴⁸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이 존재했다. 미국은 이미 1982년에 한국이 대미 흑자를 기록하자 수입자유화 등 한국에 시장 개방을 요구한 바 있었고 1986년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증가하자 미국은 한국을 불공정 무역국가로 규정했다. 그리

47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48 「해외관광 45세 이상 허용 추진」, 《동아일보》, 1987년 1월 15일.

고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 원화 절상 등 광범위한 통상 압력을 가했다.⁴⁹

미국으로부터 압력이 가해지자 한국은 늘어 가는 국제수지 흑자를 어떻게 하든 줄여 보려고 했다. 흑자가 과도하게 날 경우 미국과 유럽 등의 무역규제 조치가 우려되며 원화 절상 압력 및 통화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흑자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된 가운데 해외여행자유화 조치가 다시 등장했다.⁵⁰

해외여행규제의 완화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여권 발급, 다른 하나는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규제를 풀어 나가는 것을 통해 해외여행통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1987년 9월에 정부는 해외여행규제를 완화한다는 목적하에서 「여권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1983년 이후부터 거의 4년 만에 해외여행에 대한 완화 조치가 실시된 셈이었다. 그리고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이전에 크게 억제되었던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이었다. 관광여권에 대한 나이 제한은 50세에서 45세로 낮췄고 예치금제도와 귀국서약서제도 폐지되었다. 같은 해 말에 「여권법 시행규칙」이 다시 개정되어 관광여권에 대한 나이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귀국 후 1년이 경과해야 다시 관광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6개월로 줄어들어 관광여행 횟수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었다.

해외여행에 대한 완화 조치들은 잇따라 1988년 때에도 진행되었다. 관광여행에 대한 여행 횟수 제한을 폐지했고, 청소년의 어학연수, 해외견학 등을 허용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의 범위를 넓혀 주었다. 또한 관광여권에 대한 나이 제한을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낮추었

49 인태정, 앞의 책, 145~146쪽.

50 「경상흑자 감축 긴급 기조 지속」, 《매일경제》, 1987년 6월 27일.

51 『여행』, 네이버블로그 쟁크네 집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http://blognaver.com/jincjinc/100001010951>).



그림3-여권에 기재된 ‘외화 환전 증명란’(1990년대)⁵¹

을 뿐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학교장이 추천하는 선행학생이나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 등 일부 경우에 한해서도 관광여권 발급을 허용했다.⁵²

이렇게 1987년 9월 이후부터 차차 완화되어 간 해외여행은 1989년에 이르러 완전 자유화를 맞이했다.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된 과정은 관광여행의 연령 폐지, 일반여권의 구분 발급의 폐지, 여권 발급 신청 서류와 여권 발급 심사 과정의 간소화로 진행되었다. 여권 발급 절차의 간소화가 주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면, 특별한 목적 없이 단지 ‘관광’이라는 명목만으로도 누구든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해외여행자유화의 진정한 의미였다. 단계적 해외여행자유화나 완전 자유화나 하는 것은 해외관광이 어느 정도 개방되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도 했다.

한편 해외여행자유화의 계기로 해외여행경비나 환전제도에 대한 통제도 완화되기는 했으나 이후 외화 유출이라는 문제 때문에 다시 통제되기도 했다. 1960~1970년대는 물론이고 1980년대에도 한국에서 해외여행경비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또한 국내 거주자가 소지할 수 있는 외화에 대한 제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이 은행에 가서 달러를 매입할 수가 없었다. 해외여행경비는 여행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정해져

52 「여권법 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37호(1988.7.1).

있으며 환전을 하려면 은행에서 여권을 제시해야만 했다. 이때 여행경비 한도를 통제하기 위해서 여권에 환전한 금액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를 앞두고 1988년에는 해외여행경비 액수 한도를 1만 달러까지 올렸을 뿐만 아니라 여권에 환전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1990년에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권에 환전 금액을 표시하는 제도가 다시 도입되었다가 1997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현금소지 사실을 외국인에게 노출시켜 여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빚을 뿐만 아니라 외국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현금과도 소지 이유로 입국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드디어 폐지되었다.⁵³ 이처럼 1989년에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이후 정부는 해외여행 소지금 한도나 환전 절차 등으로 외화 유출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한도가 순수한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이 이루어지는 데에 크게 지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2. 해외관광의 대중화: 해외관광여행 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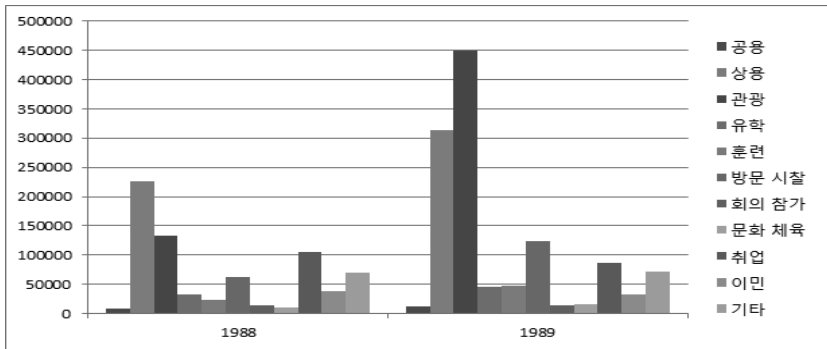
1983년부터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를 계기로 제도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해외관광이 허용되었으나 각종 조건들로 허용 대상의 범위가 좁혀진 상태였다. 그러나 1989년에 완전 자유화되어 형식적으로 누구나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외관광으로 떠날 수 있게 되자 이전에 일종의 특권으로

53 「해외여행 기본 경비 1인당 3천 불이내」, 《매일경제》, 1983년 1월 11일, 3면; 「해외여행경비 7,500 달러까지 허용」, 《동아일보》, 1988년 9월 7일, 7면; 「5천불 이내 외화 소지 주민증 제시로만 환전 내달부터」, 《경향신문》, 1988년 10월 21일, 7면; 「거주자 환전제도 폐지」, 《매일경제》, 1990년 4월 30일, 1면; 「여권에 환전금액 기재제도 개선」, 《연합뉴스》, 1996년 7월 20일.

표3-1983~1990년도 총 내국인 출국자 대 관광 목적 출국자 수⁵⁴ (단위: 명/%)

연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총 내국인 출국자	493461	493108	484155	454974	510538	725176	1213112	1560923
관광 목적 출국자	2443	2577	1745	3101	12871	133851	448727	590486
구성비	0.5	0.5	0.4	0.7	2.5	18.5	37.0	37.8

그림4-1988~1989년도 목적별 내국인 출국 현황⁵⁵ (단위: 명)



부여되었던 해외관광은 이제 온 국민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로 바뀐 것이었다. 이는 해외관광의 대중화를 촉진한 결정적인 계기였다.

1988년부터 나이 제한에 대한 완화 조치로 관광 목적의 출국이 급격히 증가했다. 1987년만 해도 총 출국자의 2.5%에 불과했던 관광 목적의 출국은 1988년에는 18.5%, 1989년에는 37%로 올라간다(표3 참조). 다른 목적의 출국 현황과 비교해도 1989년에 해외관광에 대한 나이 제한이 철폐되면서 관

54 교통부, 『교통통계연보』(1993), 364쪽; 연도별 출입국관리 통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에서 재구성.

55 한국관광공사·교통부(편), 『한국관광통계 1989』(1990), 69쪽의 표를 재구성.

광 목적의 해외여행이 그동안 제일 많았던 상용 목적의 해외여행을 앞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4 참조).

한편 해외여행자유화는 관광상품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여권제도상 해외관광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을 계기로 ‘저가’ 해외관광상품들이 등장했다. 해외관광에 대한 나이 제한 완화로 해외관광 수요 증가가 전망되면서, 여행사들은 부유층에 한정되었던 패키지 관광상품들에서 벗어나 여행비용 중 숙박비, 식사요금, 교통비 등을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상품들을 개발하는 데 나섰다.⁵⁶ 그 결과 1988년부터는 20만 원대부터 일본, 동남아 패키지상품들이 출현했다. 반면 여행 일정이 이전 시기에 비해 단축되었는데 이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직장 등의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중년층의 해외관광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를 계기로 1980년대 후반부터 저가 여행상품들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코스와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 1987년 이전까지는 일본과 대만, 태국 등 동남아 위주의 여행상품이 대부분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유럽, 남미,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지로 여행상품 코스가 다양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관광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것은 무엇보다도 해외 신혼여행이나 배낭여행 등이 등장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한국에서 신혼여행이 보편화된 것은 1970년대이지만, 1980년대 초중반에도 해외여행이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지는 국내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1989년에 해외관광 전면 자유화를 계기로 신혼여행의 코스가 차츰 국내에서 국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조치를 앞두고 1988년 말부터 여행사들은 새로운 해외신혼여행 상품 개발에 나섰다 그 다음 해 1월부터 해

56 「유럽 16박 3백만 원 신」, 《경향신문》, 1987년 7월 25일.

외신혼여행 상품이 팔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등장한 해외신혼여행 상품은 아주관광의 ‘레인보우 허니문투어’였다.⁵⁷

사실 1989년의 해외여행자유화를 계기로 종전 국내로 한정되었던 신혼여행 코스가 해외까지 확장되기는 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외신혼여행은 그렇게 보편화되지 못했다. 이는 해외여행의 경제적인 면이나 해외여행에 대한 정보 부족 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여행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였다. 비록 해외여행에 대한 여권상의 통제는 없어졌지만 해외관광이 ‘특권층’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혹은 특별한 소비활동이라는 인식이 아직 존재했다. 이런 점에서 해외신혼여행은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떠나는 여행이었다.

4월 사이판, 괌 지역을 4박 5일로 다녀온 어떤 내외는 부모님이 아직 해외여행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 해외 신혼여행 계획을 세워놓고도 부모님보다 먼저 해외여행을 하는 송구스러움 때문에 망설였으나 여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수속하는 중 부모님께서 아시고 먼저 ‘즐겁게 다녀오라’고 했다면서, 다음 기회엔 부모님들도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생각이라고 했다.⁵⁸

이후 1993년쯤 이후부터서야 해외신혼여행이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한다. 여행업체들이 신혼여행 상품을 단체여행에 함께 끼워 파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신혼여행 상품들의 가격을 낮추었고, 이를 계기로 해외신혼여행 패턴이 점점 국내에서 해외로 바뀌게 되었다.⁵⁹

1990년대 중후반까지 해외신혼여행도 사치여행으로 여겨졌지만 이보다

57 《동아일보》, 1989년 1월 1일, 9면.

58 「해외신혼여행 A to Z」, 《신부》, 1989년 8월호, 380쪽.

59 「해외신혼여행 증가 동남아는 경비도 제주수준」, 《경향신문》, 1993년 4월 6일.

더 사치스러운 해외여행 상품들이 등장하기 했다.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골프·스키·낚시·곰 사냥 해외여행 등이 이런 종류의 ‘사치성 해외여행’으로 평가받고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다.

골프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것이었다. “눈과 추위 때문에 국내에서는 골프 치기가 어렵게 되자 기후가 좋은 외국을 찾아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고 돌아오는 호화판 해외골프여행”이 1985년대쯤부터 일부 여행사들에 의해 개발된 바 있었다.⁶⁰ 이후 골프 여행만 아니고 낚시, 곰 사냥 등 이른바 관광을 겸한 취미활동의 여행상품, 혹은 레저스포츠 해외여행 상품들이 잇따라 나타났다.⁶¹ 그러나 그동안 과소비 억제, 외화 절약만을 중시해 왔던 사회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런 사치성 해외여행은 비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통제되기에 이르렀다. 통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랬듯이 출국을 아예 막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부과하거나 여행사들로 하여금 상품 판매를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여행사들로부터 사치성 해외여행자들의 명단을 전원 접수하여 내사를 실시했고, 이들 중 소득원이 뚜렷치 않거나 고가 사치품 구입, 외제승용차 다수 보유 등 다른 호화 생활 자료와 중복돼 적발된 사람은 본인 및 가족들까지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⁶² 한편 한국관광협회에서도 여행업체들에게 소비 풍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해외여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소비 풍조를 조장하거나 사회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해외여행 상품 판매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⁶³

더욱이 1990년에는 교통부가 나서서 낚시·사냥·골프·초등학생 해외연수

60 「신정연휴 「해외골프여행」 성행, 《경향신문》, 1985년 12월 23일.

61 「올 해외여행상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해외여행》, 1989년 5월호, 20쪽.

62 「호화 해외여행자 내사, 《동아일보》, 1989년 12월 1일.

63 「「예약」 열풍이 「해약」 삭풍으로 사치성 해외관광 움짱, 《경향신문》, 1989년 12월 21일.

등 사치성 해외여행을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 억제하기로 했고, 한국관광협회와 여행업계도 “공동으로 건전한 해외여행상품을 개발토록 하는 한편 사치성 여행상품의 개발은 자제토록 하고”, 이를 위해 “문화·종교·역사탐방 등의 건전여행 상품 개발과 함께 이미 판매 중인 골프·낚시·쇼핑·곰사냥 등 일부 사치성 상품의 판매를 증진”하도록 했다.⁶⁴

이처럼 비록 해외여행은 완전 자유화되었으나 어떤 종류의 해외여행이나에 따라서 그 ‘자유화’의 의미가 달라졌다. 정부는 계층 위화감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과소비로 간주되었던 사치성 해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여행자들로 하여금 자제하도록 했고, 해외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등장한 것은 해외배낭여행이었다. 한국에서 해외배낭여행의 효시는 김찬삼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이 해외여행을 꿈꾸지도 못한 시기에 김찬삼은 배낭을 들고 1958년 첫 해외여행에 나선 이후 몇 차례나 세계일주 여행을 했다. 그의 여행기들은 당시에 거의 집집마다 한 권이라도 있었거나 빌려서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읽어 보았던 베스트셀러였다.⁶⁵ 해외여행이 불가능했던 시절, 한국 이외의 ‘외부’와 거의 차단되었던 일반인들에게 김찬삼의 여행기는 한국 아닌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꿈꾸게 했다.

이후 1981년에 박경우라는 중앙대학교 1학년 학생이 방문목적의 여권을 발급 받고 동남아를 무전여행으로 돌아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1981년에 『배낭족』이라는 책을 펴내 한국에서 배낭여족·배낭여행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등장시켰다.⁶⁶ 그 뒤를 이어 몇 명의 배낭여행자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모

64 「사치성 해외여행 교통부, 적극억제」, 《매일경제》, 1990년 6월 29일.

65 우정덕, 「김찬삼의 『세계일주무전여행기』 고찰: 1960년대 독서 대중의 세계 인식과 연결하여」, 『한민족어문학』 56(2010), 432쪽.

66 「젊음의 ‘배낭’에 세계를 담아오다」, 《경향신문》, 1997년 6월 11일.

두 문화 여권 등을 발급받고 편법적으로 ‘위장’ 출국한 자들이었다. 해외관광에 대한 나이 제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란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여전히 꿈만 같았다. 예컨대, 온갖 방법과 경로를 뒤져서 결국 여권을 발급받는데 성공한 김정미는 “비행기도 타 보고 출세했다.”라고 했다.⁶⁷

그러다가 1989년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나이 상관없이 해외관광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고 학생들은 그때부터야 비로소 자유롭게 해외여행길에 나설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택한 해외여행은 패키지관광이 아니라 바로 배낭여행이었다. 배낭여행은 적은 경비로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져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이 되어 버렸다. 한편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와 대학생 과외지도 부업 허용이 맞아 떨어지면서 대학생들의 해외여행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기도 했다.⁶⁸ 대학생 과외금지 조치의 해제가 대학생들에게 여행경비를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해준 것이었다.

1989년에 500여 명에 달한 해외배낭여행자들은 1990년에는 3,0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후에도 해외배낭이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직장인, 주부들까지 인기를 끌어 해외배낭여행 붐이 일어났다. 곳곳에서 배낭여행 설명회들이 개최되었고, 여행사들도 직장인·신혼여행·가족여행 등으로 개별 배낭여행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했다.⁶⁹ 그러나 이런 상품은 기존의 패키지 상품들과 달리 왕복항공권, 철도, 유스호스텔 할인권, 국제학생증, 여행보험이나 여권 발급 등 수속을 대행해 주는 데 그쳤고 그 밖의 여행일정 계획은 여행자에게 맡겨져 있었다.⁷⁰

67 김정미, 『배낭 하나 달랑 메고』(서울: 햇빛출판사, 1988), 39쪽.

68 「젊은이 해외여행 원년을 보내면」, 《해외여행》, 1990년 12월호, 114-115쪽.

69 「배낭여행 살아 있는 지구촌 체험 열기 89년 해외여행자유화 뒤 새 풍속도」, 《한겨레》 1991년 11월 9일.

70 「배낭하나에 낭만 싣고 유럽으로」, 《한겨레》 1990년 6월 13일, 11면쪽.

해외배낭여행이 이처럼 사회 각 계층에 크게 확산되고 각광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과 자유로운 여행일정이었다. 한편 경비가 저렴하다는 특징 때문에 배낭여행은 과소비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당시 배낭여행으로 일본에 갔던 한 직장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여행을 묘사했다.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해외의 풍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익히며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고, 특히 세계 제1의 경제대국 일본의 발전상과 현 주소를 파악한다는 투철한 목적의식을 지님과 동시에 과소비라는 단어를 단번에 제압해 버리는 배낭을 짊어지고 해외여행을 떠났으니 그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⁷¹

그런데 저렴한 가격의 해외배낭여행은 사치성 여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소비라는 비난에서는 자유로웠지만 “외국 가서 나라 망신한다.”라는 비판을 종종 받게 되기도 했다. 돈 안 내고 기차를 이용한다든지, 공공장소에서 화투를 친다든지, 신변 문제 등 배낭여행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⁷² 한편 여행사를 통해 계획되고 인솔자도 같이 동반된 단체여행보다 혼자서 떠나는 개별여행은 더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89년 임수경의 평양축전참가 사건이었다. 임수경은 형식상으로 일본 관광으로 출국한 것이었지만, 독일을 거쳐 1989년 6월 30일에 축전에 참여하려고 북한에 입국했다.⁷³ 물론 임수경 사건은 정부로 보면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극단적인’ 부작용 사례였다.

71 「일어서라! 직장인들이여」, 《해외여행》, 1990년 11월호, 78쪽.

72 「대학생 배낭여행 7천여명 유럽 「유랑」」, 《동아일보》, 1991년 8월 9일.

73 「임수경 평양 축전참가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검색일: 2016.12.24).

그러나 외국에서의 문화적 실수나 올바르지 않은 태도 등으로 국가 체면을 손상한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이를 대비하여 여행사나 관광공사 등이 여행설명회들을 적극적으로 개최했다. 예컨대, 1991년 11월에 교통부가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에 배낭여행 건전화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고,⁷⁴ 이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건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행 방법, 여행 정보 등을 소개하는 배낭여행 정보교육을 진행했다.⁷⁵ 여행사들 또한 패키지관광과 배낭여행이 절충된 형태의 ‘자유여행’ 상품 판매에 나섰는데, 여행사에서 현지교통과 숙소를 알선해 주고 관광 일정은 개별적으로 하는 이런 자유여행 상품은 배낭여행자들의 무임승차나 노숙 등의 문제들을 일체 해결한 것이었다.⁷⁶

그리고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 대비하여 정부는 해외여행 후보자들을 위한 소양교육의 내용을 반공교육에서 방문국의 문물, 관습소개, 여행 예절, 여행 정보 중심으로 바꾸었다.⁷⁷ 단계적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해외에서 북한에 포섭된다는가 하는 것보다 현지의 문화와 관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실수 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여행지의 문화와 관습, 여행예절 등을 위주로 소양교육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었다.⁷⁸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외국에서의 한국 이미지, 국가 체면 손상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있었고, 특히 유럽으로 가는 배낭여행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서구에서 한국의 국가 위신이 중요한 문제였다.

해외배낭여행은 대학생들한테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해외여행을 갈 수

74 「91' 해외여행 6대뉴스」, 《해외여행》, 1991년 12월호, 97쪽.

75 「한국관광공사 배낭여행 정보교육」, 《동아일보》, 1992년 5월 27일.

76 「올 겨울 배낭여행 패키지형 자유여행 인기」, 《해외여행》, 1992년 11월호, 70쪽.

77 교통부,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국민의 건전 여행 유도대책」(1988, BA0085299).

78 물론 소양교육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배낭여행자 때문만이 아니고 해외여행자 전반에 대한 이와 같은 교육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있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세계여행에 도전하고 바깥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한편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여행 패턴인 배낭여행을 통해 ‘자유’를 경험하는 동시에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유럽에 비추어 한국인들의 생활방식은 여유 없고 갑갑하고 무질서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 세계 속에서 ‘국력이 신장’한 나라였다는 것이 여행을 통해서 받은 느낌이었다.⁷⁹⁾ 배낭여행을 통해서 경험된 애국심이나 국력 신장에 대한 확신 혹은 자부심은 실은 정부가 의도한 바이기도 했다. 이것이 더욱 적실하게 드러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구권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로 여행이었다.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각 대학의 학생회 간부들을 소련, 헝가리 등에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경에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보도록 하려는 허는 의도가 있었다. 1992년쯤까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방문 시 안기부 감시요원까지 파견되었다.⁸⁰⁾

그러나 해외여행자의 송출에 아무리 국가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늘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행은 집을 갖는 의미를 새롭게 하고 집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확신하도록 해 준다.⁸¹⁾ 그런 점에서 해외여행은 소속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강화하고 ‘타자’ 속에서 ‘우리’를 재발견하고

79 「젊은이들 위한 배낭족 특별좌담회」, 《해외여행》, 1989년 6월호, 25쪽.

80 오창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로망, 해외여행」, 《프레시안》, 2007년 7월 6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4709?no=84709>; 「주말 디스코장엔 젊은 열기 가득 대학생들의 첫 공산권 방문기」, 《경향신문》, 1989년 3월 8일. 감시와 통제하에서 이런 해외여행은 스탈린 후 소련에서 이루어졌던 해외여행과 유사한 것이기도 했다. 스탈린 후 소련 정부는 국민들의 출국을 제한하면서도 국가 홍보와 국력 신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해외관광 송출을 주도한 바 있었다. 이때 서유럽으로 여행한 관광객들은 서로에 의해서, 혹은 특정한 감시요원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 Anne E. Gorsuch, *All This Is Your World: Soviet Tourism at Home and Abroad After Stali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을 참조할 수 있다.

81 닝왕(저), 이진형·최석호(역), 『관광과 근대성: 사회학적 분석』(서울: 일신사, 2004), 42쪽.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 혹은 애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반면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자유분방한’ 유럽으로의 여행은 그동안 억압적이고 각종 규제들 속에서 살아 왔던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그런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V. 결론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분단과 전쟁, 체제대립,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운 권위주의 정권의 수립, 국가주도의 고도 경제성장과 그것을 위한 전면적인 동원의 시대를 거쳤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는 ‘반공’과 ‘근대화’, 경제성장을 내세워 여러 가지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했고, 두발과 옷차림, 취미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곳곳에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이루어졌다. 그중 하나가 출국 혹은 해외여행에 대한 통제였다.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의 개입과 통제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한국의 해외여행 통제의 경우에는 주된 요인은 경제적인 것, 즉 외화 사정이었다.

한국에서 해외여행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국가(정권)가 경제개발을 지상의 목표로 내세우게 된 1960년대부터였다. 박정희 정권의 정당화 요인이기도 한 경제개발계획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해서 노동과 생산, 절약과 저축을 강조하는 한편 소비와 낭비를 억제하려고 했던 큰 배경 속에서 해외여행, 특히 해외관광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해외관광을 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람들이 국민 중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꼭 엄격하고 명시적인 규제가 없더라도 이것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여행 통제를 강조하고 부각했는데 이는 국민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효과를 낳았다.

한 가지는 해외관광을 사치성 소비인 만큼 억제되고 자제해야만 하는 것으로, 또 그 절차도 상당히 힘들고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식되게 해서 일찌감치 해외여행 자체를 포기하게 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개발을 위한 전 국민적 동원 태세 속에서 정부가 상류 특권층의 사치와 일탈을 견제함으로써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정부의 조치에 의해 해외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될 때까지 해외여행이 통제된 현실에 대해 시민사회의 큰 저항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권위주의 군부독재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그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저항이 존재했고, 시민적 자유와 권리, 평등에 대한 요구가 강렬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1961년 5·16군사쿠데타, 1972년 10월의 '유신' 선포,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무력탄압과 신군부의 쿠데타 등으로 성립·유지되었던 군부독재는 1987년 민주항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저항 속에서도 해외여행의 규제가 갖는 비민주적 성격, 거주와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지적된 바가 없다. 결국 형식적으로 보면 해외여행 통제의 완화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국민적 저항에 대응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방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반면 1980년대 초 아무 근거 없는 차별적·선택적 통제로 구성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도, 1983년 이래 정부가 해외여행에 대해 다시 규제에 나섰을 때도 시민사회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가 하면,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일부 상류층의 호화여행, '과소비'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시민사회와 여론이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관광을 둘러싼 통제와 완화 과정은 1980년대의 한국 사회의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 준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관광사업법」, 「여권법(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해외유학에 관한규정」, 「해외이주법」.
-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 외무부훈령 제72호, 《관보》, 1972년 7월 25일.
- 『제103회 제4차 국회 외무위원회 회의록』, 1979. 11. 21.
- 『제108회 제16차 국회 외무위원회 회의록』, 1981. 12. 7.
- 『제110회 제2차 국회 외무위원회 회의록』, 1982. 3. 11.
- 『제114회 제7차 국회 외무위원회 회의록』, 1982. 11. 9.
- 「여권법증개정법률안」, 『제41회 제1차 국회본회 회의록』, 1964. 3. 24.
- 「여권법증개정법률안」, 『제40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964. 3. 18.
- 「여권법시행령증개정령안」 제765호, 1981. 7. 23(BA0084965).
- 「해외여행 자제촉구」, 1983. 2. 24(BA0398709).
- 「해외여행 제한 방안에 관한 보고」, 1963. 5(BA0084364).
- 「해외여행시 선물반입 억제 홍보」, 1987. 01. 24(BA0609606).
- 「해외여행자유화에 따른 대책」, 1983(BA0246476).
- 「해외여행통제」, 1968(EA0002552).
- 교통부,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국민의 건전 여행 유도대책」, 1988(BA0085299).
- 교통부, 『연도별 교통통계연보』.
- 국제관광공사(편), 『전국민여행동태조사』, 서울: 국제관광공사, 1984.
- 국제관광공사(편),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국제관광공사, 1988a.
- 국제관광공사(편), 『전국민여행동태조사』, 서울: 국제관광공사, 1988b.
- 국제관광공사(편),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국제관광공사, 1989.
- 국제관광공사(편),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서울: 국제관광공사, 1991.
- 국제관광공사(편),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서울: 국제관광공사, 1994.
- 한국관광공사·교통부(편), 『한국관광통계, 1989』, 1990.

2. 논저

- 국사편찬위원회, 『여행과 관광으로 본 근대』, 서울: 두산동아, 2008.
- 권기숙, 『신혼여행의 사회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8.
- 김도형, 「여행권(집조)을 통해 본 초기 하와이 이민의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 2013, 293~329쪽.
- 김도형, 「한국 근대 旅行券(旅券) 제도의 성립과 추이」, 『한국 근현대사 연구』 77, 2016, 7~55쪽.
- 김미영, 「1960-70년대에 간행된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산문」, 『외국문학연구』 50, 2013, 9~33쪽.
- 김봉, 『관광사』, 서울: 대왕사, 2010.
- 김설하, 「여권의 기원과 등장으로 본 개항기 근대성, 1883-1905」,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김정미,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서울: 햇빛출판사, 1988.
- 녕왕(저), 이진형·최석호(역), 『관광과 근대성: 사회학적 분석』, 서울: 일신사, 2004.
- 박부진, 「신혼여행의 문화사: 새로운 통과의례의 시작과 현재」, 『한국문화인류학』 40-1, 2007, 3~42쪽.
- 서호철,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 호적제도의 변용과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세방(주), 『世邦25年史』, 世邦, 1986.
- 송영오, 『사랑과 명예: 한 외교관의 삶과 정치 에세이』, 서울: 해누리, 2012.
- 안성미, 「여행안내서에 나타난 일본 표상: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전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알리에바 바하르, 「한국에서 해외관광의 형성: 1980년대 '해외여행자유화'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과주: 서해문집, 2010.
- 우정덕, 「김찬삼의 『세계일주무전여행기』 고찰: 1960년대 독서 대중의 세계 인식과 연결하여」, 『한민족어문학』 56, 2010, 427~455쪽.
- 윤대순, 「旅行業의 商品開發에 關한 研究: Package tour를 中心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이정은, 「'난민' 아닌 '난민수용소', 오투라 수용소」, 『사회와 역사』 103, 2014, 323~348쪽.
- 인태정, 『관광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인태정, 「포스트모더니즘과 관광에 관한 시론적 연구」, 『경제와 사회』 88, 2010, 187~214쪽.
- 장세진, 「역내 교통의 (불)가능성 혹은 냉전기 아시아 지역 기행」, 『상허학보』 31, 2011, 123~171쪽.
- 조성운,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서울: 경인문화사, 2011.
- 조성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수학여행」, 『한일민족문제연구』 23, 2012, 65~105쪽.
- 차승기, 「수용소라는 안전장치: 오무라(大村)수용소, 폴리스, 그리고 잉여」, 『한국학연구』 32, 2014, 315~337쪽.
- 최진두, 「國民 海外旅行의 旅行商品 開發과 販賣促進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한국여행신문사, 『한국관광50년비사』, 서울: 한국여행신문사, 1999.
- Gorsuch, Anne E., *All This Is Your World: Soviet Tourism at Home and Abroad After Stali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Torpey, John, *The Invention of The Passport: Surveillance, Citizenship, and Th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3. 기타

- 「여행」, 네이버블로그 썬크네 집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http://blog.naver.com/jincjinc/100001010951>).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 국가법률정보센터(<http://www.law.go.kr>).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국회 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 이지상, 「한국 근, 현재 여행기 역사」, 한양대학교박물관 전시 <여행하는 인간>, 2016. 5. 30. ~2016. 8. 27.
- 전자관보(<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Main.do>).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KBS 제2TV <상쾌한 아침입니다>, 1982.9.1.

「예약 열풍이 「해약」 삭풍으로 사치성 해외관광 움찔», 《경향신문》, 1989년 12월 21일.

「50세 이상 해외관광객», 《매일경제》, 1983년 2월 22일.

「5천불 이내 외화 소지 주민증 제시로만 환전 내달부터», 《경향신문》, 1988년 10월 21일, 7면.

「91' 해외여행 6대뉴스», 《해외여행》, 1991년 12월호.

「거주자 환전제도 폐지», 《매일경제》, 1990년 4월 30일, 1면.

「경상후자 감축 건축 기조 지속», 《매일경제》, 1987년 6월 27일.

「공직자와 해외여행선물», 《경향신문》, 1983년 2월 16일.

「대학생 배낭여행 7천여명 유럽 「유랑」», 《동아일보》, 1991년 8월 9일.

「배낭여행 살아 있는 지구촌 체험 열기 89년 해외여행자유화 뒤 새 풍속도», 《한겨레》
1991년 11월 9일.

「배낭하나에 낭만 싣고 유럽으로», 《한겨레》1990년 6월 13일, 11면.

「사진 부분 화확 처리 여권 특수제작», 《동아일보》, 1982년 10월 7일.

「사치성 해외여행 교통부, 적극억제», 《매일경제》, 1990년 6월 29일.

「시행령 개정방침 여권 발급 대폭 간소화», 《경향신문》, 1980년 6월 7일.

「신정연휴 「해외골프여행」 성행», 《경향신문》, 1985년 12월 23일

「여권 이렇게 달라진다», 《동아일보》, 1981년 7월 25일.

「여권만 제시하면 1인 3천불교환 외국환관리 개선», 《경향신문》, 1980년 10월 3일.

「여권에 환전금액 기재제도 개선», 《연합뉴스》, 1996년 7월 20일.

「올 겨울 배낭여행 패키지형 자유여행 인기», 《해외여행》, 1992년 11월호.

「올 여름 방학부터 대학생 해외연수 규제 풀어», 《경향신문》, 1980년 7월 23일.

「올 해외여행상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해외여행》, 1989년 5월호.

「유럽 16박 3백만 원 선», 《경향신문》, 1987년 7월 25일.

「일어서라! 직장인들이여», 《해외여행》, 1990년 11월호.

「젊음이 해외여행 원년을 보내면», 《해외여행》, 1990년 12월호.

「젊은이들 위한 배낭족 특별좌담회», 《해외여행》, 1989년 6월호, 25쪽.

「젊음의 「배낭」에 세계를 담아오다», 《경향신문》, 1997년 6월 11일.

「주말 디스코장엔 젊은 열기 가득 대학생들의 첫 공산권 방문기», 《경향신문》, 1989년 3월 8일.

「취업 여권 발급 때 신원보증제 폐지», 《동아일보》, 1980년 6월 25일.

「관치는 위조 여권 출입국에 큰 구멍», 《동아일보》, 1982년 9월 14일.

「한국관광공사 배낭여행 정보교육», 《동아일보》, 1992년 5월 27일.

- 「한국인 ‘보따리 쇼핑’에 특수 노리는 일하관향», 《경향신문》, 1983년 1월 31일.
- 「해외관광 45세 이상 허용 추진», 《동아일보》, 1987년 1월 15일.
- 「해외관광여행신청 저조 자유화 한달동안 83건뿐», 《동아일보》, 1983년 2월 2일.
- 「해외신혼여행 A to Z’, 《신부》, 1989년 8월호.
- 「해외신혼여행 증가 동남아는 경비도 제주수준», 《경향신문》, 1993년 4월 6일.
- 「해외여행 관광적금제 검토», 《경향신문》 1977년 6월 3일.
- 「해외여행 기본 경비 1인당 3천 불이내», 《매일경제》, 1983년 1월 11일, 3면.
- 「해외여행가이드», 《경향신문》, 1983년 8월 9일.
- 「해외여행경비 7,500 달러까지 허용», 《동아일보》, 1988년 9월 7일, 7면.
- 「해외여행 자유와 뒤 첫 단체 나들이», 《동아일보》, 1983년 2월 23일.
- 「호화 해외여행자 내사», 《동아일보》, 1989년 12월 1일
- 「환전책·위조책 4명 34만 달러 사건», 《동아일보》, 1982년 6월 16일.
- 오창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로망, 해외여행», 《프레시안》, 2007년 7월 6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4709?no=84709>.

국문초록

오늘날 한국에서 해외관광은 경제적·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화된 여가활동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해외관광이 이렇게 대중화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80년대 중엽까지 한국에서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었다.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이민, 파병, 이주노동 등 국가의 정책과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면 국민 중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특히 강력하게 억제되었던 것은 해외관광이었다. 198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해외관광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해외관광 금지 정책의 결과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래의 장밋빛 꿈으로 이야기되던 ‘해외여행자유화’는 1981년에야 실현에 옮겨져 해외관광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이 또한 전면 자유화가 아니라 단계적 자유화, 규제의 단계적 완화였다. 이렇게 한국에서 해외관광은 시장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되거나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대상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를 살펴보면서 한국에서 해외관광 형태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했다.

투고일 2023. 12. 20.

심사일 2024. 1. 25.

게재 확정일 2024. 2. 14.

주제어(keywords) 여행(travel), 관광(tourism), 해외여행(overseas travel), 해외관광(overseas tourism), 해외여행자유화(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여권(passport)

Abstract

The Formation of Overseas Tourism in Korea in the 1980s

Bahar, Aliyeva

Overseas tourism in Korea is currently a popular leisure activity that anyone with a little extra time and money can enjoy. However, the popularization of overseas tourism in Korea started only recently. Overseas travel by local residents in Korea was the subject of strict control up to the mid-1980s, and overseas tourism was a particular target of suppression. Despite the continuous rapid growth of the economy, 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until the 1980s, the Korean government rarely allowed overseas travel by its citizens, not as a response to economic or social conditions but as a result of government policies prohibiting overseas tourism.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which was merely a rosy dream for the future from the end of 1970s, was finally realized in 1981 when regulations on overseas tourism were partially relaxed. In this paper, we examine how overseas tourism was formed in Korea through the “overseas travel liberalization” processes in the 1980s.